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865
----------	-------

발의연월일 : 2023. 12. 8.

발 의 자 : 이동주 · 문정복 · 김영배
인재근 · 강민정 · 김종민
박용진 · 이해식 · 김영선
김철민 · 이정문 · 권칠승
이용빈 · 홍영표 · 안규백
김상희 · 이인영 · 서영교
정성호 · 정태호 · 김홍걸
조응천 · 홍정민 · 송갑석
이상헌 · 임종성 · 민병덕
유동수 · 이원욱 · 도종환
양기대 · 전해숙 · 윤영덕
이장섭 · 전용기 · 이성만
한병도 · 허종식 · 김병욱
소병훈 · 박상혁 · 한준호
의원(4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하위법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33733호)에서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상한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되, 상한시간의 적용 예외대상을 규정하고 있

음.

그런데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의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를 상시 직접 수행하는 운전원의 시간외근무는 상한시간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반면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수당 지급이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회의원의 전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 적용에서 배제함으로써 형평을 제고하고 정당한 수당 지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등).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 중 국회의원의 전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근무시간 외

에 근무하는 경우

4.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생략) <u><신 설></u>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현행과 같음) <u>②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u> <u>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u>를 제외하고는 시간외근무수당</u> <u>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u> <u>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u> <u>초과할 수 없다.</u>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

②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u> 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 중 국회의원의 전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 4.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 -----.
---	---